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 단축 등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 단축 ····· 3

2. 공직선거 공소시효 연장 ····· 10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

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 단축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 공표금지 시작일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 전 1일부터”로 늦추어 전체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선거일 제외 6일→1일)시키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1일----------. ② ~ ⑭ (생 략)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당시(1994년)에는 “선거기간개시일[1]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루어지다가 2005년 법 개정[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선거일 전 6일부터”로 결과공표금지 기간이 단축되었음.[3]

그러나, 여전히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유권자들은 현재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지 못하고 투표에 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4]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5]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2002년 법 개정으로 금지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2일로 단축하였고,[6] 캐나다의 경우 선거 2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발표를

---

1) 1994년 법 제정 당시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은 “선거일전 22일”이었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1994.3.16. 제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기간)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3일(이하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候補者登錄期間”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법률 제7681호(2005.8.4. 일부개정)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 처음에는 선거여론조사 자체가 금지됨. 이승만정부 시절 1958년 제정된 참의원의원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 이 조항은 1980년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도 그대로 들어갔음. 1992년에야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허용됐는데, 당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일 28일 전부터” 금지됐음. 그 이후 기존의 여러 선거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1994년 제정되면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도 다소 줄어 선거일 전 22일전부터로 정해짐. 지금처럼 선거일 6일전부터가 된 건 2005년임. 출처:한국일보(2025.6.1.), “누구 뽑아야 하나...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4) TV조선(2025.5.27.), “여론조사 공표 금지...꼭 해야 하나?”
중앙선데이(2024.4.6.),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유권자 더 어둡게 만든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410.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412.

금지하다가 1998년 법원이 “정부는 유권자를 성숙하고 교양있는 시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함에 따라 선거 당일에만 공표를 금지하도록 변경하였고, 2014년에는 공표금지 조항 자체를 폐지한 바 있음.[7)]

《 세계 각국의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blackou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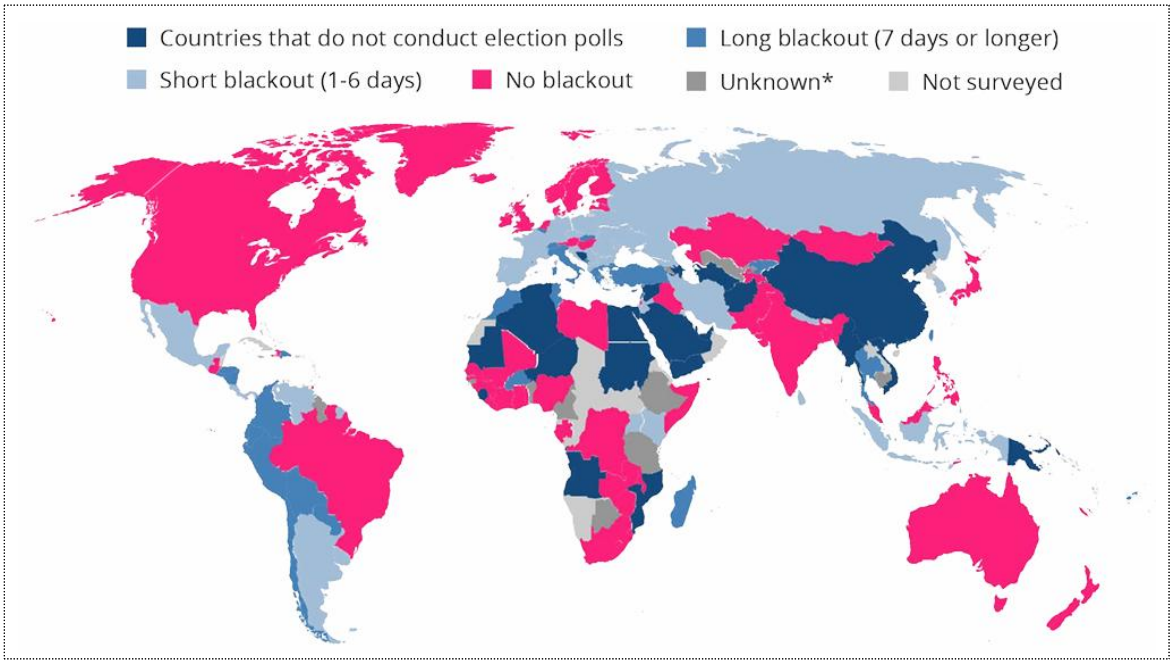

※ 주석: 붉은색(공표금지 없는 곳, No blackout), 푸른색(색이 연한 곳이 공표금지 기간 짧은 곳)
※ 자료: WAPOR(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세계여론조사협회), The Freedom to Conduct and Publish Opinion Polls,(2023), p.21. (https://wapor.org/publications/freedom-to-publish-opinion-polls/freedom-report-2023/)

이에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인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 공표금지 시작일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 전 1일부터”로 늦추어 전체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7) 중앙선데이(2024.4.6.),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유권자 더 어둡게 만든다”

단축(선거일 제외 6일→1일)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려는 것임.

《 세계여론조사협회의 의견 》

"Blackout periods of such length are more than restrictions on reporting. They outlaw reliable poll information during critical periods of election campaigns and thus expose voters to mis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 information that cannot be verified.
(긴 공표 금지기간은 단순한 보도 제한을 넘어섭니다. 선거운동의 핵심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정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유권자들은 검증할 수 없는 다른 출처의 허위 정보에 노출되게 됩니다.)

Places where pollsters can conduct polls in the days before elections but cannot publish them beforehand create inequality in access to critical information. Pollsters can only share results with their clients, and only those who can pay have access. The public - without pre-election poll information - has little or no opportunity to prepare for what happens when the votes are counted.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결과 공표는 금지되는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를 오직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오직 지불 능력이 있는 자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 사전 여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준비할 기회를 잃습니다.)

The struggles after the 2017 election in Honduras, which has a 30-day poll embargo, is a good example of this. There were claims of fraud on both sides, with protests that turned violent. There were no pre-election polls that could have given the public advance notice of the closeness of the contest.
(30일 공표 금지 조치를 운영한 2017년 온두라스 대선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양측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졌고,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려주는 사전 여론조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Historically, well-designed and methodologically sound election polling has been exceptionally accurate, despite a few high profile off-target estimates. The success of pre-election polls, measured by their matching election results, has changed little in recent years. Over the long-term, polling in the last week of election campaigns has become even more accurate."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선거 여론조사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부 유명한 오차 사례가 있긴 했지만, 선거 결과와의 일치도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 몇 년간 그 정확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실시된 여론조사일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료: WAPOR(세계여론조사협회), The Freedom to Conduct and Publish Opinion Polls,(2023), p10.
(https://wapor.org/publications/freedom-to-publish-opinion-polls/freedom-report-2023/)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임.

《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의 취지(92헌마177등) 》

"여론조사는 민주정치의 구현수단으로서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의 경우마다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공표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일에 가까와질수록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진의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는 불공정·부정확하게 행하여지기가 쉽고 그러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많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의 긍정적 기능도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일 여론조사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표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조작하려 든다면 설문을 일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거나 표본을 편파적으로 추출함으로써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기법의 숙련도 혹은 시간과 경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조사기간, 조사대상의 범위,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질문의 방식 등에 따라 그 결과가 각기 달리 나타나거나 정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예상투표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여론조사기관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결과와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결과가 공표되게 되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와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이탈리아, 대만 등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긴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두고 있음.

《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운영하는 나라 현황 》

구 분	국가명
선거일 전일부터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이라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선거일 전 2일~3일부터	**호주**, 체코, 조지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선거일 전 4일~5일부터	**스페인,**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칸, 룩셈부르크, 러시아
선거일 전 6일~7일부터	**한국**, 볼리비아, 몽골, 페루,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선거일 전 8일~9일부터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가봉
선거일 전 10일 이상부터	**이탈리아, 대만**,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모로코, 파라과이, 싱가포르, 튀니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415. 자료 재편집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과 선거일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져올 부작용 가능성, 우리의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폐지하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행위는 금지[8]하는 개정의견을 2023년 1월 제출한 바 있음.[9]

8) 사전투표 이후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선거일 전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임.
9) 참고자료1(p.15) 참조.

2. 공직선거 공소시효 연장

개정안은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현행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268條(公訴時效) ①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생 략)[10]	第268條(公訴時效) ① ----------1년----------1년----------. ----------. ② ----------1년----------. ③ (현행과 같음)

10) 제268조(공소시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공소시효(짧게는 1년, 길게는 25년)[11]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있음.

공소시효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12]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13] 이의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으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14]

현행법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함임.

---

1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13)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에 공소제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함. 이창현, “형사소송법((2022), p.602

14)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2022)”, p.344

《 단기 공소시효 특례의 취지(2012도4637) 》

"공소시효제도의 구체적인 형성은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위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형량하여 조정할지의 문제이다.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앞서 본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역사적·문화적 배경,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또는 법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이다. 이처럼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그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1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규정을 말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된다. 이하 같다)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에 따른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선거범죄의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6월의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범죄의 특성상 수사 착수와 증거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15]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16]

15) 선거범죄는 당사자들 간의 공모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고발이나 제보없이는 수사 착수가 어려움. 또한, 선거 직후에는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인해 수사가 즉시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아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현행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상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거에 따른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결하여 국정 및 지방행정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1년”의 공소시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7]

또한,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18] 및 「국민투표법」[19]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관계 법률의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해외 입법례로 일본의 경우 종전에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62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선거범죄도 통상 일반범죄의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 공

---

16) 서울신문(2024.10.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6개월 시효 너무 짧아”
문화일보(2024.8.21.),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임박...법조계 6개월은 짧은 법개정 필요”

17) 선거범죄(금권선거, 불법선거운동)는 빠르게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불법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증언의 신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거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 수사를 종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길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인물을 표적 수사하거나, 필요한 때만 기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9) **「국민투표법」 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선거범죄 중에서도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우리 선거법의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20]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의견을 2023년 1월 제출한 바 있음.[21]

문 의 처
02)6788-5332

20) 김진, “선거범죄 단기 공소시효 제도의 적정한 설계를 위한 소고-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모색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기틀”, 법학논총 41권4호(2024), pp.202-205.
21) 참고자료2(p.16) 참조.

참고1 중앙선관위 개정의견(2023.1.17.)

◎ 선거여론조사 공표 · 보도 금지기간 폐지(§108①)

현 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동일 기간 중 공표·보도를 금지함.

개정의견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도록 함.

○ 다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편승효과 또는 열세자효과 등 여론조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활용성 및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임.

○ 다만,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투표 출구조사 공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참고2 중앙선관위 개정의견(2023.1.17.)

◎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 개선(§268)

현 행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

개정의견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제안이유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거나 인지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단속 및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최소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